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 9. 24 선고 2020가단2013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한범석

피 고 음성군

소송대리인 B, C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2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DEFG에게는 각 6,047,890원, 선정자 HIJ에게는 각 2,015,96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이 사건 2020. 6. 30.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2020. 1. 10.부터 충청북도 음성군 K 도로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원고(선정당사자)선정자 DEFG에게는 매월 각 112,242원, 선정자 HIJ에게는 매월 각 37,41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선대인 L은 1912. 5. 4. 충청북도 음성군 M 답 4,022평을 사정 받았다. 1938. 2. 7. 위 M 답 4,022평에서 이 사건 토지 126평이 분할되었고, 1943. 2. 7.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1947. 3. 11.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8. 6. 27.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2. 18.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35. 6. 21. 음성군 O시장 설치허가가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주변에는 현재까지 전통시장(현 명칭은 P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1938. 2. 7. 이 사건 토지 분할 이후 또는 1943. 2. 7. 지목 변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또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 2, 4, 6.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주장

(1) 피고 주장

이 사건 토지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43. 2. 7.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또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시효취득하였다.

(2)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반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조선총독부 또는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6.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7. 3. 11.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 사실에 갑 1~5, 을 1~7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의 무단점유가 입증되었다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1935. 6. 21. 음성군 O시장 설치허가가 있었다. 이후 1938. 2. 7.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Q와 R도 같은 날짜에 분할되었다. 이 토지들은 일직선 형태의 인위적인 도로

모양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이들 토지는 비슷한 무렵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② 이 사건 토지 등 도로 주변에는 현재까지 전통시장(현 명칭은 P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도로는 분할 및 지목 변경 후 현재까지 약 80여 년 동안 대한민국 또는 피고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Q, R 등이 도로로 편입됨으로써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던 S 또는 분할 후 T 등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④ N은 1947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와 접한 S, T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등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 이후 S, T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1947년 무렵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N 또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로부터 어떠한 보상 요구나 이의 제기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⑤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무렵 일제강점기에는 도로의 개설과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하여 토지수용령, 조선시가지계획령 등의 법령 및 지침이 존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3) 소결론

1943. 2. 7. 지목 변경 이후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 2. 7. 무렵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명의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점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12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배타적 사용 · 수익권 포기 주장

(1) 피고 주장

덕정 시장 설치 및 도로 개설로 인근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상승되었고, 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토지 소유자 또는 토지를 취득한 N 등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상신했다.

(2) 판단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943 판결 등 참조), 토지의 원소유자가 그 토지를 인근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인근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는 그 토지상에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특정승계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고, 토지의 점유자 역시 아무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013 판결 등 참조).

앞서 3의 가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N은 위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러한 점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청구 기각.

판사 남천규

선 정 자 명 단

1. A
2. D
3. E
4. F
5. G
6. H
7. I
8. J. 끝.

